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강원랜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영업장에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내국인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강화되었으나, 카지노업 영업준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태양이 다양한 바, 일률적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이에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과중한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66조의2 제4항)

- 1) 감사원의 강원랜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함에 따라 강원랜드의 관광진흥법 시행

령 개정 요청

- 2)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치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

- 1)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영업장에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데, 내국인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카지노사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카지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음
- 2) 또한,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강화되었으나, 카지노업 영업준칙 위반의 경우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어, 영업준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태양이 다양한 바, 일률적으로 3년의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측

면이 있음

- 3)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음
- 4)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완화하여, 선량한 카지노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경우 및”을 “경우,”로, “위한 경우로”를 “위한 경우 및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통제관리를 위한 경우로”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2호저목10)의 경우는 최근 1년으로 한다”로 하고, 제2호저목4)나) 위반사항란 나) 중 “경우”를 “경우(다만,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내국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내국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u>경우</u>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u>경우로</u>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 ----- ----- ----- ----- <u>경우</u> , ----- ----- <u>위한</u> <u>경우 및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대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로</u> ----- ----- -----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885